관세사 법인 및 합동사무소 - 2023년

보험료표

Case선택	Case A - 사고공동부담비율 미적용			Case B - 사고공동부담비율 15%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	보험료(1청구당 / 연간 총 보상한도액)			연간보험료(1청구당 / 연간 총 보상한도액)			
1백만원	785,000				523,000			
2백만원	704,000	1,089,000	1,258,000	1,370,000	468,000	726,000	835,000	911,000
3백만원	652,000	1,011,000	1,168,000	1,275,000	434,000	672,000	777,000	847,000
5백만원	619,000	967,000	1,071,000	1,148,000	411,000	645,000	712,000	763,000
1천만원	579,000	920,000	1,011,000	1,084,000	385,000	612,000	672,000	721,000
1천5백만원	520,000	823,000	932,000	1,011,000	346,000	546,000	619,000	672,000
		se C - 사고공동부담비율 30%						
Case 선택	Ca	se C - 사고공	공동부담비율 30	0%			비율 각 15%,	
Case 선택 보상한도액	Ca 1천만원	se C - 사고공 2천만원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을 초과하고 보	보상한도액을 넘	지 않는
	1천만원	ı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을 초과하고 보 피보험자의 눈	보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F	지 않는 3), 30%(C)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해당금액을	을 초과하고 보 피보험자의 분 공제하고 보싱	보상한도액을 넘 보담비율 15%(k 바하여 드립니다	지 않는 3),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천만원 연간.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해당금액을 ※ <u>보험 기간</u>	을 초과하고 보 피보험자의 분 공제하고 보싱 중 가입조건 변	보상한도액을 넘 보담비율 15%(k 바하여 드립니다	지 않는 3),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1천만원 연간. 220,000	2천만원 보험료(1청구당	3천만원 / 연간 총 보상힌	5천만원 노도액)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해당금액을 ※ 보험 기간 ※ 관세법인(% <u>전부가 동</u> (을 초과하고 5 피보험자의 분 공제하고 보싱 중 가입조건 년 통관취급법인) ' 일한 조건으로 '	선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I 함하여 드립니다 변경 불가 및 합동사무소는 일 <u>괄 가입</u> 하여여	지 않는 3), 30%(C) · - 등록관세사 야 합니다.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 연간. 220,000 197,000	2천만원 보험료(1청구당 307,000	3천만원 / 연간 총 보상한 354,000	5천만원 도약) 385,000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해당금액을 ※ <u>보험 기간</u> ※ 관세법인(전부가 동) 단, 개업신.	을 초과하고 보 피보험자의 분 · 공제하고 보성 중 가입조건 변 통관취급법인) ['] 일한 조건으로 ' 고시 <u>관세사법</u>	보상한도액을 넘 보답비율 15%(함하여 드립니다 변경 불가 및 합동사무소년 일 <u>괄 가입</u> 하여여 제2조 제5호부	지 않는 3), 30%(C) · = 등록관세사 · 합니다. 터 제8호까지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1 천만원 연간. 220,000 197,000 184,000	2천만원 보험료(1청구당 307,000 284,000	3천만원 / 연간 총 보상한 354,000 329,000	5천만원 '도액) 385,000 358,000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해당금액을 ※ <u>보험 기간</u> ※ 관세법인(전부가 동) 단, 개업신.	을 초과하고 보 피보험자의 분 공제하고 보싱 중 가입조건 변 통관취급법인) 일한 조건으로 연 고시 관세사법 행하는 관세사는	선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I 함하여 드립니다 변경 불가 및 합동사무소는 일 <u>괄 가입</u> 하여여	지 않는 3), 30%(C) · = 등록관세사 · 합니다. 터 제8호까지

- * 보상한도는 1청구당/연간 총 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매 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 상기 보험료는 관세사 1인당 보험료이며, 최종납입보험료는 소속된 관세사별 보험료를 합산 적용됩니다.
- * 연간총 보상한도액은 상기 1청구당 보상한도액에 관세사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 보상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원하실 경우 록톤코리아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사고 가입 기간에 따른 할인

구분	신규~1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6년 이상 ~ 10년 이하	11년 이상 ~ 14년 이하	15년 이상
할인율	0%	5% 할인	7% 할인	10% 할인	15% 할인

사고자 보험료 할증

보험금을 수령하신 관세사님들은 갱신시 수령보험금 규모에 따라 3개년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규모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백만원 이하	50%	미적용	미적용
5 백만원초과 ~ 1 천만원이하	80%	50%	미적용
1 천만원초과 ~ 2 천만원이하	150%	80%	50%
2 천만원 초과	250%	150%	80%

-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관세사님은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복원하여야 합니다.
- * 할증기간 중 추가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차년도 할증은 기존 적용 할증율과 비교하여 높은 할증율을 적용 (3년간 순차 적용)

사무원의 부정직행위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는 관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적용을 원칙
- 가입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사무원에 대하여 보장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자기부담금 (1 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1천만원 / 1천만원	50 만원	80,000 원
T선인권 / T선인권	1 백만원	73,000 원

^{*} 본 특별약관의 1청구당/연간총 한도는 1천만원으로 사무원 1인당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이 아닙니다.